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정 2004. 11.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대학원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대학원학칙 제2조에서 정한 대학원에 적용한다. <개정 2016.2.11.>

제2장 입학

제3조(선발시기) 입학전형은 매 학기 시작 2개월 이전에 시행하며, 특별전형은 일반전형 이전에 시행한다. <개정 2016.2.11.>

제4조(응시자격) ① 학위과정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개정 2016.2.11.>
 - 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나. 그 밖에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국내·외 정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나. 그 밖에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학·석사연계과정의 응시자격은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제5조(제출서류)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개정 2016.2.11.>
 - 가. 입학원서 1부
 - 나.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1부
 - 다.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마.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1부(일반대학원 특별전형에 한함)
 - 바. 국외 학사학위취득자는 일체의 서류를 한글로 번역한 공증서 1부
 - 사.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박사학위과정 <개정 2016.2.11.>
 - 가. 입학원서 1부
 - 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다. 대학 및 대학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라.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각 1부(특별전형에 한함)
 - 마.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1부(특별전형에 한함)
 - 바.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특별전형 해당자에 한함)

사. 국외 석사학위취득자는 일체의 서류를 한글로 번역한 공증서 1부

아.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6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이론 및 전공실기시험을 실시하되, 예술심리치료학과의 경우 전공실기시험은 제외한다. <개정 2018.2.25.>

④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형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11.]

제7조(전형방법) ① 서류심사는 대학성적, 전공수학능력, 종사하는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지역사회 공헌 정도, 수학이후의 예상공헌도를 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② 필기시험은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 등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은 이론 및 전공실기능력을 각각 5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 면접시험은 학업성적 및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 적성, 동기, 인격, 의사표현력 등 5개 항목을 A(18점 이상 20점 이하), B(16점 이상 18점 미만), C(14점 이상 16점 미만), D(12점 이상 14점 미만), F(0점)으로 평가하여 합계 6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결시한 경우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한다.

④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점 및 합격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11.]

제8조(전형위원) ① 전형위원은 필기시험을 위한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위한 심사위원으로 구분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형위원은 개별적·비공개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9조 삭 제 <2016.2.11.>

제10조 삭 제 <2016.2.11.>

제11조 삭 제 <2016.2.11.>

제12조(특별전형) ①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 정원의 지원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14.>

1. 석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학부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자

나. 대학 전임교원,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다. 국·공립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연구원

라.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마. 전문 직종 종사자(의사, 판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등)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바. 전공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사. 기초시·군의원,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아. 공기업 또는 상장기업 과장급 이상인 자

자.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학부 평균성적이 3.5/4.5 이상이고 석사학위과정 평균성적이 4.0/4.5 이상인 자

나. 대학 전임교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다. 전문 직종 종사자(의사, 판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변리사 등)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자한 자

라. 국·공립연구소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마. 기초시·군의원,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개정 2016.12.14.>

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사. 공기업 또는 상장기업 과장급 이상인 자

아.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13조 삭 제 <2016.2.11.>

제14조 삭 제 <2016.2.11.>

제15조 삭 제 <2016.2.11.>

제16조 삭 제 <2016.2.11.>

제17조(합격사정) 대학원위원회는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에 따라 학과(전공)별 합격 인원을 심의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18조(등록) ①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학과(전공)에 관계없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19조 삭 제 <2016.2.11.>

제20조(편입학) ① 편입학 전형은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에 의한다.

②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입학 원서
2. 대학 졸업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3. 대학원 성적증명서
4. 수료 및 제적증명서
5. 자기소개서 및 연구계획서 (해당자에 한함)

③ 일반대학원 편입학은 2차 및 3차 학기에 한정하여 허가하며,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1. 석사학위과정 2차 학기 편입학은 6학점, 3차 학기 편입학은 12학점
2. 박사학위과정 2차 학기 편입학은 9학점, 3차 학기 편입학은 18학점

④ 특수대학원 편입학은 3차 학기 이내에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만,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수료한 자는 4차 학기 편입을 허가하며 외국어시험은 면제하되 1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차 학기 편입학은 6학점
2. 3차 학기 편입학은 12학점

⑤ 편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21조(재입학)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재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입학자는 자퇴 또는 제적 이전의 등록 및 취득학점을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나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22조 삭 제 <2016.2.11.>

제23조 삭 제 <2015.3.1.>

제24조 삭 제 <2016.2.11.>

제25조(전공변경) ① 전공변경은 2차 학기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②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2차 학기 시작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공변경신청서
2. 성적표
3. 전공변경 이전 및 이후의 지도교수 승인서

③ 전공을 변경한 자가 전공을 변경하기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공통과목에 한정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자퇴

제26조(등록) ① 등록은 입학, 재입학, 편입학, 학기등록, 수료자 등록(연구학기)으로 구분하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② 등록횟수는 대학원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에 따른다.

③ 수업연한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학점당 등록금액은 수업료를 일반대학원은 9학점, 특수대학원은 6학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6.12.14.>

④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정해진 기간(석사학위 과정은 수료 후 3년, 박사학위 과정은 수료 후 5년)이 경과한 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학기 수료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정하여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4.>

1. 등록자는 논문지도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2. 등록금은 1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27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및 사고는 5주 이상의 진단서
2. 군 입대는 입영명령서 사본
3. 장기 해외 출장 유학은 관련 증빙 서류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증빙 서류

② 휴학신청서는 매 학기 시작 수업일수 1/3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타당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자는 복학예정학기 시작 30일 이전에 휴학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28조 삭 제 <2016.2.11.>

제29조 삭 제 <2016.2.11.>

제30조 삭 제 <2016.2.11.>

제31조(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 해당학기 시작일로부터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허가받은 자는 해당 학기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업료를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32조 삭 제 <2016.2.11.>

제33조 삭 제 <2016.2.11.>

제34조 삭 제 <2016.2.11.>

제4장 교과과정, 학점이수 및 수료

제35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공통과목, 전공과목, 선수과목 등으로 구분하며, 교육목표 및 학부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및 학위과정별 이수 및 수료학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6., 2016.12.14., 2018.2.25.>

③ 이수단위는 과목당 1학기 15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예체능계열 실기과목은 총장의 승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11.]

제36조 삭 제 <2016.2.11.>

제37조 삭 제 <2016.2.11.>

제38조 삭 제 <2016.2.11.>

제39조(강좌개설) ① 학기 당 개설 강좌는 석사학위과정은 4개 강좌, 박사학위과정은 5개 강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정으로 추가 개설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을 모두 개설하고 있는 학과(전공)는 석·박사학위과정 통합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강학생이 3명 미만인 강좌에 대한 인정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의2(주임교수) ① 대학원 각 학과에 주임교수를 둔다.

②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관련분야 전임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③ 주임교수는 교육과정 운영 및 제반 학사업무를 주관하며, 다음과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도교수 배정 전 학생지도
2. 교육과정운영 및 교과목설강
3. 지도교수 및 시간강사 추천
4. 선수과목 결정 및 동일 이수과목 인정
5. 학점 및 자격시험에 관한 지도 및 추천
6. 학위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위원 추천
7. 그 밖에 학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본조개정 2016.2.11.]

제40조(담당교수) ① 담당교수는 교내·외 박사학위를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은 교내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② 담당교수는 한 학기당 1과목에 한정하여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2과목 이상을 담당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담당교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임교수는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41조 삭 제 <2016.2.11.>

제42조(시간강사) 시간강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제43조 삭 제 <2016.2.11.>

제44조(학점교류) 타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시작 1주일 이내에 정해진 양식의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제45조(해외유학) ①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신청서와 유학계획서 및 해당 대학원에서 발행하는 유학승인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학기간 중에는 휴학하여야 한다.

③ 유학기간 중에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원 교육과정에 상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11.]

제46조 삭 제 <2016.2.11.>

제47조(수강신청)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수업계획서를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일반대학원은 학기당 9학점, 특수대학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특수대학원에서 졸업시험을 선택한 자: 8학점
2.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 10학점
3.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자: 9학점
- ③ 수강신청의 추가 및 변경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군 복학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3선까지 추가 및 변경할 수 있다.
- ④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강의담당교수, 지도교수, 주임교수, 대학원장,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강과목 철회 후 잔여 신청과목이 3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 제외되지만 학적부에는 W로 기재된다.
- ⑤ 수강과목 중 F판정을 받은 공통, 전공과목은 재수강하여 이수하여야 하나 타 전공의 과목은 다른 과목으로 대신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11.]

제48조 삭 제 <2016.2.11.>

제49조 삭 제 <2016.2.11.>

제50조 삭 제 <2016.2.11.>

제51조 삭 제 <2016.2.11.>

제52조 삭 제 <2016.2.11.>

제53조 삭 제 <2016.2.11.>

제54조 삭 제 <2016.2.11.>

제55조 삭 제 <2016.2.11.>

제56조(선수과목) ① 비동일계 출신자에게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과목으로 15학점 이내를 학과 내규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4.>

② 선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학부에 개설된 과목,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개설된 과목으로 한다.

③ 선수과목은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취득성적이 3.0 미만일 경우 재수강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57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과목별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②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오기 또는 기타 사유로 성적이 누락되었을 경우 증빙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③ 학기 중에 군 입대로 인해 휴학한 자는 수업일수 2/3 이상을 수강한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수시시험 성적을 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담당교수는 학업성적을 정해진 기간에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성적평가 근거자료는 정해진 기간 보관하도록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58조 삭 제 <2016.2.11.>

제59조 삭 제 <2016.2.11.>

제60조 삭 제 <2016.2.11.>

제61조 삭 제 <2016.2.11.>

제62조 삭 제 <2016.2.11.>

제63조 삭 제 <2016.2.11.>

제64조(교원자격증) ① 교육대학원생 중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대학원과 학부에서 취득한 교직과정의 교직과목(22학점 이상)과 전공과목(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이 입학연도별 성적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2.11.>

② 학교현장실습(2학점)은 정해진 실습비를 납부하고 4학기 또는 5학기에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③ 교육봉사는 1학기부터 5학기까지 총 6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2학점 PASS로 운영한다.

④ 그 밖에 교원자격증 취득에 관한 사항은 교원자격검정기준에 따른다.

제5장 자격시험

제1절 외국어 시험

제65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일반대학원은 2학기, 특수대학원은 3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1. TOEFL IBT 87점 이상
2. TOEFL PBT 567점 이상
3. TOEIC 750점 이상
4. TEPS 628점 이상
5. TOPIK 4급(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본조개정 2016.2.11.]

제66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67조(시험시기) 시험시기는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2016.2.11., 2017.6.15.>

제68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영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한문, 한국어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으나 전공과 동일한 외국어는 선택할 수 없다.

② 출제범위는 전공영역과 관계가 있는 외국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69조 삭 제 <2016.2.11.>

제70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50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제71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강의담당교수 중에서 1~2명을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2.11.>

제72조(합격인정) 합격인정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제73조(재시험)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횟수에 관계없이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2절 종합시험

- 제74조(응시자격)**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여 평균성적이 3.0 이상이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석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16.2.11.>
- 제75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 제76조(시험시기)** 시험시기는 학기 중 정해진 기간에 실시한다. <개정 2016.2.11., 2017.6.15.>
- 제77조(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공통 또는 전공과목에서 3과목으로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은 전공 2과목, 예능계열 학과는 이론 2과목과 실기 1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7.6.15.>
 ②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공통 또는 전공과목에서 4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7.6.15.>
 [본조개정 2016.2.11.]
- 제78조(시험시간)** 시험시간은 과목당 50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2017.6.15.>
- 제79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주임교수가 강의담당교수 중에서 추천하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석사학위과정은 2명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 제80조(합격인정)**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 제81조(재시험)**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6장 학위논문

- 제82조(제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1. 수업연한 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을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개정 2017.6.15.>
 2. 2학기(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수료자 등록을 마친 자(수료자 등록 대상자에 한정함)
 6. TOPIK 4급 이상 취득자 또는 한국어 강좌 100시간 이상 수강자(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신설 2017.6.15.> <개정 2018.6.6.>
 7. 졸업연주회 또는 작품전시회에서 합격한 자(예능계열에 한하되, 예술심리치료학과는 제외한다.) <개정 2018.2.25.>
- ② 박사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 제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연한 등록을 필하고 수료학점을 이수하거나 이수예정인 자 <개정 2017.6.15.>
 2. 2학기(회)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수료자 등록을 마친 자(수료자 등록 대상자에 한정함)
 6. 일반대학원 연구실적세칙에서 정한 연구실적을 충족한 자
 7. TOPIK 4급 이상 취득자 또는 한국어 강좌 100시간 이상 수강자(외국인 유학생에 한함) <신설

2017.6.15.> <개정 2018.6.6.>

[본조개정 2016.2.11.]

제83조(논문지도) ① 대학원별 논문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문지도는 Pass(합격) 또는 Fail(불합격)로 평가하며, 성적표에 P와 F로 표시한다.
2. 논문지도는 3학기과 4학기에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원 2학기를 마친 자는 3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3학기과 4학기 2회에 걸쳐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입원 및 퇴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논문제목을 변경할 경우 논문제목 변경신청서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으로 논문제목이 80% 이상 변경된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논문지도를 받는 자는 정해진 논문지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84조(지도교수의 자격과 직무) ① 지도교수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논문제목 설정, 논문연구 계획 작성, 논문 완성 등을 지도한다.

- ②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제2호의 자는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논문지도는 해당학생의 전공분야와 동일한 전공분야의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비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2. 해당 분야(전공)의 전문가로 대학원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지도교수는 석·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3명 이내에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조명변경 2017.6.00.]

제85조(작성원칙) ① 학위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문을 혼용하거나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 ② 논문의 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갖추어야 한다.
1.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며 논문의 주제가 학술적으로 타당성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연구하는 학문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독창적으로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연구의 내용이 고도의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85조의2(논문구성) ① 논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표지(검정색)
2. 속표지(표지규격과 동일)
3. 제출서
4. 인준서
5. 목차
6. 도표 목차(필요할 경우)
7. 본문

8. 부록(필요할 경우)

9. 영문초록(자연계열에 한정하며 본문 앞에 삽입)

10. 인용 및 참고문헌

② 논문작성은 본교 논문작성법에 따르며, 논문인쇄는 횡서에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86조(제출시기) 제출시기는 5월과 11월, 연 2회로 한다.

제87조(구비서류)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정해진 심사료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접수 신청서 1부

2. 심사용 논문원고(박사 5부, 석사 3부)

3. 주임교수 추천서 1부

4. 연구실적조서(박사학위과정에 한함)

5. 졸업연주회 확인서 또는 작품발표회 확인서 1부(예능계열에 한하되, 예술심리치료학과는 제외한다.)

<개정 2018.2.25.>

6. 연구윤리 교육 수료증 1부 <개정 2018.6.6.>

7. 학위논문이용 허락서 1부

8. 논문표절검사서 1부 <신설 2018.2.25.>

9.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승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신설 2018.6.6.>

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88조 삭 제 <2016.2.11.>

제89조(공개발표)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는 학과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6.2.11.>

제90조(논문접수) 대학원위원회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10일 이내에 논문의 접수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제91조(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의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이상으로 한다. 다만, 그 학문분야에 저명한 인사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과정은 3명, 박사학위과정은 5명으로 구성하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이 되며,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1명, 박사학위과정은 2명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이 질병 및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은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여 총장이 위촉하되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본조개정 2016.2.11.]

제92조 삭 제 <2016.2.11.>

제93조 삭 제 <2016.2.11.>

제94조 삭 제 <2016.2.11.>

제95조 삭 제 <2016.2.11.>

제96조(심사방법)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 내용, 체제, 연구 성과 등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 ② 심사에 필요할 경우,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부분, 역본 또는 모형 표본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논문심사는 석사학위논문은 3회, 박사학위논문은 5회에 걸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심사기간은 심사위원 위촉일로부터 석사학위논문은 5주, 박사학위논문은 8주 이내로 한다.
- ⑤ 학위논문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정해진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97조(심사연기) 논문 주제 및 취급 방법의 타당성,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수정, 보완 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부실하여 해당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논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논문 제출자는 1학기 이상 경과한 후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8조(구술시험) 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에 관하여 구술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2016.2.11.>

제99조(심사평가) 학위논문 및 구술시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위원 2명 이상이 80점(특수대학원 70점) 이상으로, 박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4명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100조(심사의결) 학위논문 심사의결은 석사학위논문은 3분의 2, 박사학위논문은 5분의4 이상이 “가(찬성)”로 의결할 때 최종합격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제101조(논문출판) ① 논문출판 사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방식: 마스터 또는 옵셋트 인쇄
- 2. 판중: 4×6배판 182mm×257mm
- 3. 지질: 80파운드 이상 백색모조지
- 4. 표지: 흑색 하드커버, 금박 인쇄
- 5. 제본: 클로스 양장과 페이퍼 바운드

② 출판된 논문은 석·박사학위과정 모두 정해진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규격은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3호]와 같다.

[본조개정 2016.2.11.]

제102조 삭 제 <2016.2.11.>

제7장 졸업시험

제103조(응시자격) ① 졸업시험은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대학원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동안 등록한 자
- 2. 대학원학칙에서 정한 수료학점 이상을 수강신청한 자
- 3.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 4.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본조개정 2016.2.11.]

제104조(응시절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응시원서와 전형료를 대학원장에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시험시기) 시험시기는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6.2.11.>

제106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전공영역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심화된 지식 및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며, 시험과목은 3과목으로 한다. 다만, 선교신학대학원은 이론 4과목과 구술시험 1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6.2.11., 2017.6.15.>

제107조(출제위원) 출제위원은 주임교수가 강의담당교수중에서 추천하며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2.11.>

제107조의2(시험시간) 시험시간은 50분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제108조(합격인정)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2.11.>

제109조(재시험)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한 학기가 경과한 후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다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8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1절 공개강좌

제110조(공개강좌) ①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개강시마다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장이 공고한다.

③ 공개강좌는 직무, 교양 또는 학문상 필요한 학부 또는 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공개강좌에 대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111조 삭 제 <2016.2.11.>

제112조 삭 제 <2016.2.11.>

제113조 삭 제 <2016.2.11.>

제114조(입학) ① 입학자격은 수학 능력이 인정되는 자로 한다.

②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재직(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 초본

③ 입학전형은 면접으로 한다.

④ 입학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115조 삭 제 <2016.2.11.>

제116조 삭 제 <2016.2.11.>

제117조 삭 제 <2016.2.11.>

제118조(등록) 등록 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기에 총장이 결정한다.

제119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1년(2학기)으로 한다.

제120조(교과과정 운영) ① 교과과정은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학기별로 교과목을 설정하여 강의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 학기에 3과목(6학점) 이상을 개설한다.
2. 성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시에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3. 취득한 성적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③ 학기별로 주제를 설정하여 강의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기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2. 성적은 출석률, 수강태도, 토론참가 실적 등을 참고하여 학기말에 Pass여부를 결정한다.
3. Pass여부를 학적부에 기록할 수 있다.

제121조(주임교수) ① 총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주임교수는 교내 전임교수로 위촉한다. 다만, 특수과정 및 전임교수가 없는 경우에는 객원교수 또는 겸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2조(수료증서 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성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학칙 제30조에 명시된 [별지 제6호]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2절 연구과정

제123조 삭제 <2016.2.11.>

제124조(입학) ① 입학자격 및 입학시기는 석사학위과정과 같다.

② 입학지원자의 제출서류는 석사학위과정과 같다.

③ 연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전형과 구두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25조(등록) 등록 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2.11.>

제126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하며, 재학연한은 1년 6개월로 한다. <개정 2016.2.11.>

제127조(교육과정) ① 연구생은 학기당 3과목 이내에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료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128조 삭제 <2016.2.11.>

제129조 삭제 <2016.2.11.>

제130조(실적증명) 연구생으로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31조 삭제 <2016.2.11.>

제132조 삭제 <2016.2.11.>

제133조 삭제 <2016.2.11.>

제134조 삭제 <2016.2.11.>

제135조 삭제 <2016.2.11.>

제136조 삭제 <2016.2.11.>

제9장 위탁교육

제137조(위탁교육) ① 위탁교육은 위탁기관의 특성에 따라 ○○시민자치대학원 등의 명칭으로 설강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등은 공개강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강의 장소는 해당기관에 출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강인원은 매학기 60명 내외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138조 삭 제 <2016.2.11.>

제139조 삭 제 <2016.2.11.>

제140조(입학) ①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2. 해당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도가 높은 자
3. 해당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수강능력이 있는 자

②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기관장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3.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③ 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해당자에 한함)으로 한다.

④ 입학시기는 2월과 8월로 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141조(등록) ① 등록 절차와 등록금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6.2.11.]

제142조 삭 제 <2016.2.11.>

제143조 삭 제 <2016.2.11.>

제14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1년(2학기), 재학연한은 2년으로 한다.

제145조 삭 제 <2016.2.11.>

제146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해당 기관장과 협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② 교육과정은 한 학기에 12주를 강의하며 교과목 단위별로 강의담당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교과목에 따라 대학원 개설강좌와 통합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대학원학칙에 따라 평가한다.

[본조개정 2016.2.11.]

제147조 삭 제 <2016.2.11.>

제148조 삭 제 <2016.2.11.>

제149조 삭 제 <2016.2.11.>

제150조 삭 제 <2016.2.11.>

제151조(수료증서) 정해진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2.11.>

제152조 삭 제 <2016.2.11.>

제153조 삭 제 <2016.2.11.>

제154조 삭 제 <2016.2.11.>

제155조 삭 제 <2016.2.11.>

제10장 장학금

제156조 삭 제 <2015.11.12.>

제157조 삭 제 <2015.11.12.>

제158조(장학금 종류) ① 장학금은 교비에서 지급하는 교내장학금과 국가 및 공공단체, 장학재단, 개인 등이 지급하는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은 조교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외국인장학금, 신앙·공헌장학금, 희망드림장학금, 교직원장학금, 기타장학금 등으로 구분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산학협동장학금, 재단장학금, 기타장학금 등으로 구분한다.

[본조개정 2015.11.12.]

제159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교내장학금은 대학원 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감면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가.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본교 학부 졸업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나.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가계상황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라.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국제한식조리학교 연계과정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30% 감면한다.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가. 지역사회 및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나. 계열별로 성적 우수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다. 학비감면 대상인원은 학기당 10명 이내로 한다.

3.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가. 본교에 재직 중인 전임 교원 및 정규직 직원에게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나. 학부 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본교 학부 졸업자에게 첫 학기 수업료의 40%를 감면한다.

다. 직전학기 성적이 4.0/4.5 이상인 학생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라. 공무원, 공사, 일반 기업체 및 사립학교 재직자, 기독교 교회 및 단체 재직자, 외국인 유학생, 본교 재직 계약직원 및 조교, 본교 재학생의 직계가족, 그 밖에 특수대학원장이 추천한 자에게 수업료의 30%를 감면한다.

② 교외장학금은 학과가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과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③ 일반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및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사정으로 수업료 납부가 곤란한 자 등에 대한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본조개정 2015.11.12.]

제160조 삭 제 <2015.11.12.>

제161조 삭 제 <2015.11.12.>

제162조 삭 제 <2015.11.12.>

제163조 삭제 <2015.11.12.>

제164조(장학위원회) ① 장학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학원위원회가 장학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개정 2016.2.11.>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에 관한 기본 정책 수립
2. 장학생 배정 및 선정
3. 장학생 자격기준 및 장학금 지급액 결정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15.11.12.]

제165조 삭제 <2015.11.12.>

제166조 삭제 <2015.11.12.>

제167조 삭제 <2015.11.12.>

제11장 삭제

제168조 삭제 <2016.2.11.>

제169조 삭제 <2016.2.11.>

제170조 삭제 <2016.2.11.>

제171조 삭제 <2016.2.11.>

제172조 삭제 <2016.2.11.>

제173조 삭제 <2016.2.11.>

제174조 삭제 <2016.2.11.>

제175조 삭제 <2016.2.11.>

제176조 삭제 <2016.2.11.>

제177조 삭제 <2016.2.11.>

제178조 삭제 <2016.2.11.>

제179조 삭제 <2016.2.11.>

제180조 삭제 <2016.2.11.>

제12장 삭제

제181조 삭제 <2016.2.11.>

- 제182조 삭 제 <2016.2.11.>
- 제183조 삭 제 <2016.2.11.>
- 제184조 삭 제 <2016.2.11.>
- 제185조 삭 제 <2016.2.11.>
- 제186조 삭 제 <2016.2.11.>
- 제187조 삭 제 <2016.2.11.>

제13장 삭 제

- 제188조 삭 제 <2016.2.11.>
- 제189조 삭 제 <2016.2.11.>
- 제190조 삭 제 <2016.2.11.>
- 제191조 삭 제 <2016.2.11.>
- 제192조 삭 제 <2016.2.11.>
- 제193조 삭 제 <2016.2.11.>
- 제194조 삭 제 <2016.2.11.>
- 제195조 삭 제 <2016.2.11.>
- 제196조 삭 제 <2016.2.11.>

제14장 보칙

제197조(준용) 이 시행세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동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2.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학칙시행세칙 및 특수대학원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② 각 대학원의 종전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본 학칙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제2호 및 제189조제2호는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4조 및 제82조의 대체의학대학원에 관한 사항은 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 및 제189조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0학년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12>

이 세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82조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9조는 2016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82조제1항 및 제2항의 7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8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7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6.12.14., 2018.2.25.>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성표 (2018학번부터)

구 분 대학원별		교 과 이 수 구 분					수료학점	비 고
		공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교직	전공 선수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24					24	
	박사과정	36					36	
경영행정대학원			24				24	
교 육 대 학 원		4	14	6 ~ 22	6	6	22이내	24
문화산업대학원			24					24
		8	16					24
선교신학대학원		4	20					24
상담심리대학원		12	12					24
부동산대학원		4	20					24

※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전공영역의 과목을 8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한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한다.

※ 교원자격증 신청자는 매학기 3학점 이내에서 교직과목을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를 원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선수과목 이수: 선수과목 이수를 필요로 하는 학과에서는 선수과목을 학부에서 지정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선교신학대학원 전공인정은 전공영역별 과목 10학점(5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8학번 이전(2017학번까지)의 학생이 공통과목 학점을 취득한 경우 전공 이수 학점으로 인정한다.

※ 일반대학원의 공통, 전공, 선수과목의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과정별 수료학점 범위에서 학과 내규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 <신설 2018.2.25.>

대학원별 교과과정 편성표 (2017학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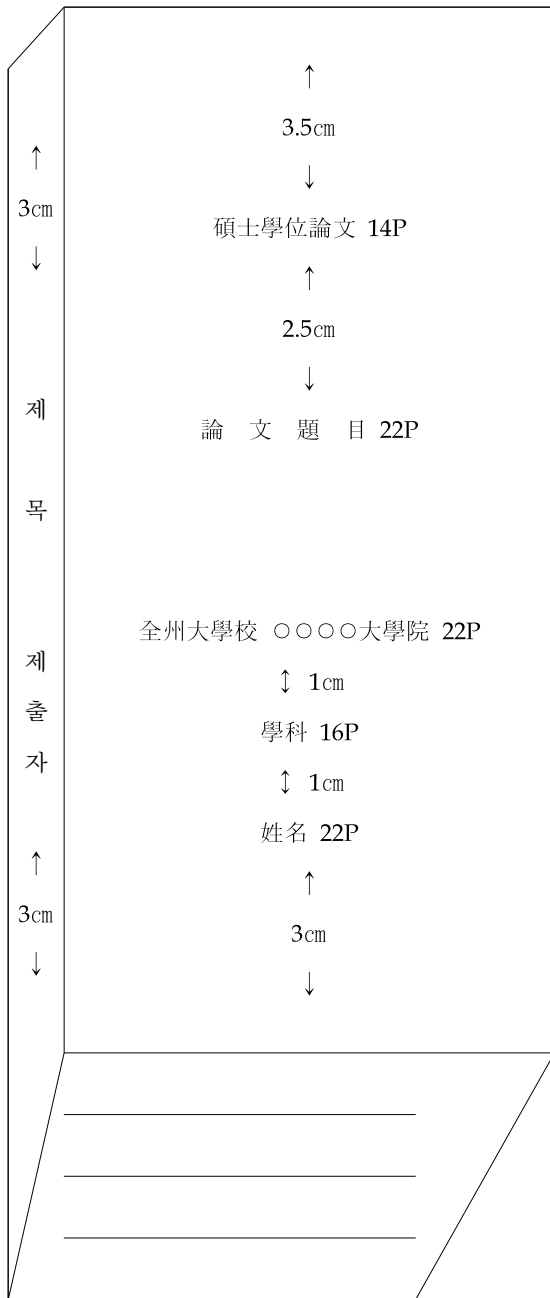
구 분 대학원별		교 과 이 수 구 분					수료학점	비 고
		공통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전공 교직	전공 선수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	24					24	
	박사과정	36					36	
행 정 대 학 원			24				24	
경 영 대 학 원		4	20				24	
교 육 대 학 원		4	14	6 ~ 22	6	6	22이내	24
문화산업대학원			24				24	
선교신학대학원			24				24	
상담심리대학원		12	12				24	
대체의학대학원		8	16				24	

- ※ 본교의 타 대학원에서 전공영역의 과목을 8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한 과목은 전공으로 인정한다.
- ※ 교원자격증 신청자는 매학기 3학점 이내에서 교직과목을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과정에서 이수를 원하는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선수과목 이수: 선수과목 이수를 필요로 하는 학과에서는 선수과목을 학부에서 지정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 경영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는 공통과목 4학점, 전공과목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선교신학대학원 전공인정은 전공영역별 과목 14학점(7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일반대학원의 공통, 전공, 선수과목의 이수구분별 이수학점은 과정별 수료학점 범위에서 학과 내 규로 지정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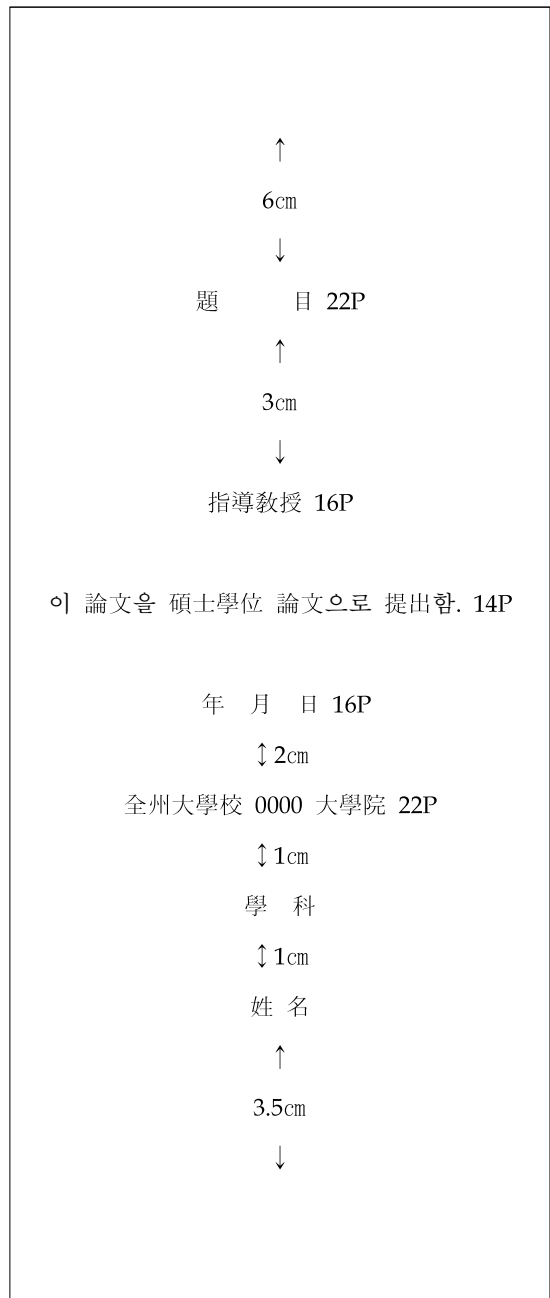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표지양식의 예



속표지의 양식



[별지 제3호]

인준서 양식의 예

	↑	
	4cm	
	↓	
←4.5cm→	○○○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	←4.5cm→
	↑	
	4.5cm	
	↓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 7cm →	年 月 日	← 7cm →
	↑	
	1.5cm	
	↓	
← 5cm →	全州大學校 ○○○○大學院	← 5cm →
	↑	
	3cm	